

문서번호	공원녹지과-22349
결재일자	2014.11.13.
공개여부	부분공개

★주무관	공원기획담당	공원녹지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	
구경만	김점화	장용수	11/13 전성용		
협 조					

개운산 근린공원 기숙사 건립반대 집단민원 처리 계획



**안전건설교통국
공원녹지과**

개운산 근린공원 기숙사 건립반대 집단민원 처리 계획

개운산근린공원내 고려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건과 관련, 개운산사랑 성북구 연합회의 집단민원 발생사항과 향후 민원 처리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.

민원내용

- ☀ 민원명 :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주민요청(개운산 근린공원)
- ☀ 접수일 : 2014. 10. 31
- ☀ 민원인 : 개운산 사랑 성북구 연합회 전상돈 외 10,619명
 - 성북구민 8,544명, 동대문 강북구 등 타구민 1,720명, 기타 355명
- ☀ 민원 주요내용(붙임 민원내용 참조)
 - 북악산로는 개설 완료 후 주변 고려대학교, 성신학원, 개운중학교 등으로 구분되어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었고, 현재 공원이 아닌 도로로만 이용되고 있음으로 중복결정된 공원을 도시 계획 시설에서 해제 요청

북악산로 도시계획시설 현황

☀ 중복결정 도시계획 현황

구분	도시계획시설 현황		결정권자	비고
도로 (북악산로)	최초	결정일 1969.2 (서울시고시 제10호)	서울시장	환상계획 도로 결정
	최종	결정일 1991.6.8 (서울시고시 제156호)	서울시장	도로폭 변경8m→15m
공원 (개운산)	결정일 1983.5.3 (건설부고시 제141호)		건설부장관	대학교지 확보를 위한 대체공원 88,943㎡

※ 개운산공원 일부가 변경결정(결정권자 건설부장관, 1983.5.3.)되면서 고려대 교지에 공원이 접하게 되었음.

관련법규

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

-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(1983년)
 - 단일구조로 된 시설로서 2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복합기능 중 주된 기능을 가지는 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단일 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당해 시설의 관리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복합기능에 따라 2이상의 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.

공원정비기준(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 <국토교통부훈령-428호>)

-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공원의 일부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
 -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
 - 공원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

기숙사 설치기준(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10호가)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(이하 이 호에서 "대학"이라 한다)의 교지(校地)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을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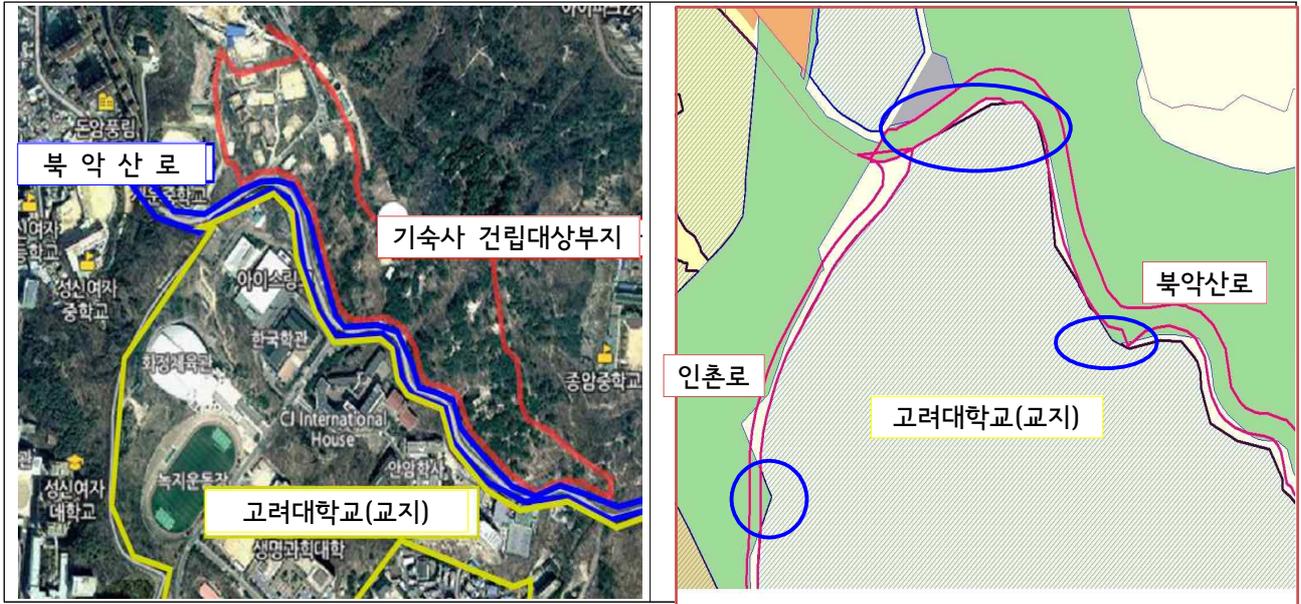
쟁점사항(문제점)

북악산로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(공원)해제 관련

- 북악산로 도시계획(도로,공원) 중복결정은 결정당시 규정에 적합하여 건설부 장관이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의 규정에도 적합함
- 도로부분의 공원 해제는 공원조정기준에 부적합함(공원이 분리되고 또한 기 공원시설계획된 곳은 조정대상이 아님)
- 북악산로는 최종 도시계획 결정(1991.6.8.)후 인접 고려대학교 및 개운산공원의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없었음

기숙사 설치기준 충족관련

- 북악산로 이외에도 인촌로 부분도 고대교지에 접해있어 북악산로 공원부분이 해제되어도, 기숙사 설치기준 요건에는 적합함



검토의견

- ☀ 북악산로의(도로,공원) 중복결정은 결정당시 규정에 적합하여 건설부 장관이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의 규정으로도 중복결정은 가능하고
- ☀ 도시·군관리계획지침 공원조정(해제 등)기준 상 공원해제로 인해 공원이 분리되고,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지역은 공원조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, 북악산로에 중복결정된 공원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않음을 회신

붙 임 : 민원내용 1부. 끝.